

2

## 변론준비기한연장신청

사 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 
원 고 김명호  
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

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석명준비명령의 준비기한이 2006. 9. 15.까지로 지정되었으나, 본 건이 상당히 오래 전의 사건인데다 담당자들의 변동으로 피고 측 준비사항에 대한 답변 및 입증자료 수집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부득이 이번엔 한하여 위 준비기한을 1주일 정도 연장하여 주시길 바라와 이에 신청하는 바입니다.

2006. 9.

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**법무법인 일신**

담당변호사 이 재 원

정 재 응



101884



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

귀 중